진 도 군 관 리 계 획 재 정 비

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

(평가항목·범위 등의 결정내용)

2019. 07

진 도 군

제 1 장 계획의 개요

1.1 계획의 배경 및 목적

◦ 대·내외 여건변화 및 장래 수요에 대비한 도시용지 확보

◦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을 통한 민원 불편해소 및 체계적·계획적 토지이용 관리

◦ 토지이용현황 및 토지적성평가 결과 등을 고려한 용도지역의 현실화

◦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해제추진

◦ 상위계획의 선제적 수용을 통해 추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초석 마련

◦ 주변 여건변화에 따른 관리방안 마련과 검토를 통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증대 및 건전한 도시발전 도모

1.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

◦ 본 계획은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 사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【별표 2】의 “ 2.개발기본계획 - 가. 도시의 개발”에 해당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.

< 표 1.2 - 1 >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

구 분	개발기본계획의 종류	협의 요청시기
가. 도시의 개발	3)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	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·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

1.3 계획의 추진경위 및 추진계획

◦ 2016년 06월 30일 : 농업진흥지역 변경·해제 고시(전라남도 고시 제2016호-256호)

◦ 2017년 03월 30일 : 농업진흥지역 변경·해제 고시(전라남도 고시 제2017호-115호)

◦ 2017년 12월 : 용역 계약 및 착수

◦ 2019년 06월 :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

◦ 2019년 07월 : 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공개

◦ 2019년 07월 : 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 협의(영산강유역환경청, 전라남도, 진도군)

◦ 2019년 07월 : 공고·공람 및 주민설명회

◦ 2019년 09월 : 전략환경영향평가(본안) 협의

1.4 계획의 내용

가. 계 획 명 : 진도 군관리계획 재정비

나. 위 치 : 전라남도 진도군 행정구역 전역(행정구역 440㎢)

다. 계 획 시 행 자 : 진도군

라. 승 인 기 관 : 진도군, 전라남도

마. 계획의 주요내용

구분	내용	비고
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	1) 용도지역 결정(변경) : 296개소 - 도시지역 : 6개소 - 비도시지역 : 24개소 - 관리지역세분 : 266개소 (고군면 30개소, 군내면 41개소, 의신면 35개소, 임회면 62개소, 조도면 27개소, 지산면 44개소, 진도읍 27개소)	도 결정사항
	2) 군계획시설 결정(변경) : 56개소 - 교통시설 45개소(도로 42개소, 주차장 2개소, 자동차정류장 1개소) - 공간시설 11개소(광장 2개소, 공원 5개소, 녹지 4개소)	군·도 결정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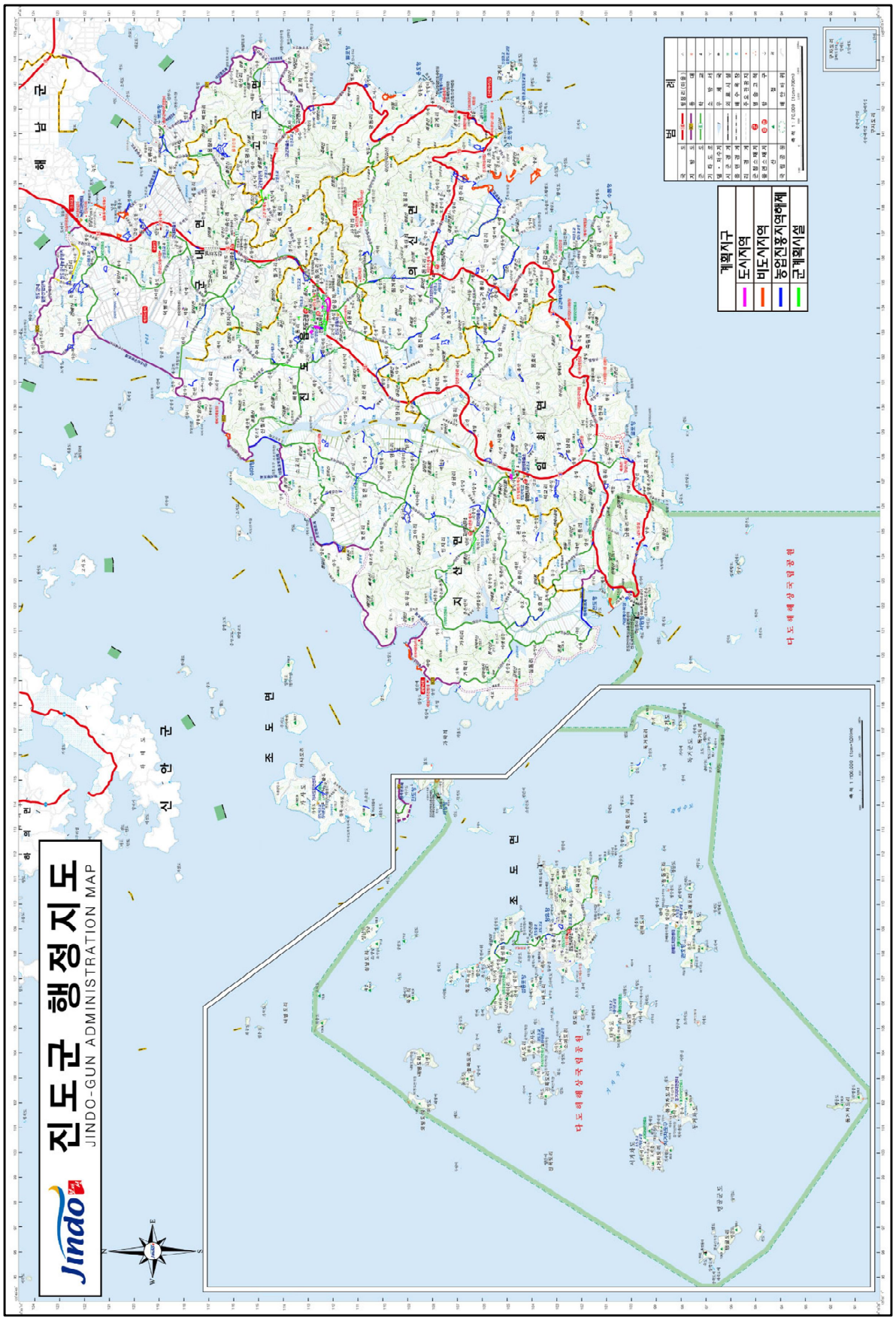

< 그림 1.5 - 1 > 계획지구 위치도

제 2 장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

2.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

◦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적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·분석하여 평가대상을 설정하였으며,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업지역의 특성 및 환경인자, 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였음.

< 표 2.1 - 1 >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

구분	항목	평가대상지역의 선정사유	평가대상지역		비고
			공간적	시간적	
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	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	◦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	-	-	
	대안 설정·분석의 적정성	◦대안 설정·분석의 적정성	-	-	
자연환경의 보전	생물다양성·서식지 보전	◦계획시행으로 인해 식물상 및 식생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◦동물상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(동물 서식지 및 이동통로 단절여부 등)	◦계획지구 및 진도군	공사시 운영시	
	지형 및 생태축 보전	◦계획시행으로 인해 식물상 및 식생변화가 예상되는 지역	◦계획지구 및 진도군	공사시	
	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	◦계획시행에 따른 경관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	◦계획지구 및 진도군	공사시 운영시	
	수환경의 보전	◦계획시행에 따른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	◦계획지구 및 하류수계	공사시 운영시	
	해양환경의 보전	◦계획시행에 따른 해양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	◦계획지구 및 인근해양	공사시 운영시	
생활환경의 안정성	대기환경기준 부합성	◦공사시 토사이동 및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대기질 영향 예상지역 ◦운영시 차량통행 및 연료사용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대기질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	◦계획지구 경계로부터 약 0.5㎞ 이내 - 인접 주거지역 등	공사시 운영시	
	토양환경기준 부합성	◦공사시 및 운영시 토양오염에 대한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	◦계획지구 및 진도군	공사시 운영시	
	소음·진동환경기준 부합성	◦공사시 공사장비 가동 및 운영시 유발교통량에 의한 소음·진동 영향 예상지역	◦계획지구 경계로부터 약 0.5㎞ 이내 - 인접 정온시설	공사시 운영시	
	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	◦계획시행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변화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	◦계획지구 및 진도군	운영시	

구분	항목	평가대상지역의 선정사유	평가대상지역		비고
			공간적	시간적	
생활환경의 안정성	자원·에너지 순환의 효율성	◦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영향예측지역	◦계획지구 및 진도군	공사시 운영시	
	위생 및 공중보건	◦계획시행에 따른 위생 및 공중보건 변화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	◦계획지구 및 진도군	운영시	
사회·경제 환경의 조화성	환경친화적 토지이용	◦계획시행에 따른 토지이용변화 예상지역	◦계획지구 및 진도군	운영시	
	인구 및 주거	◦계획시행에 따른 인구 및 주거 변화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	◦계획지구 및 진도군	운영시	

2.2 평가항목·범위·방법 등의 설정

2.2.1. 평가항목의 선정

◦ 본 계획시행시 환경영향요소와 입지여건 등 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 “환경부고시 제2018-205호” 「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」 및 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항목을 설정하였음.

< 표 2.2 - 1 > 평가항목의 설정

구분	평가항목
중점평가 항목(12)	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, 대안 설정·분석의 적정성, 생물다양성·서식지 보전, 지형 및 생태축 보전,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, 수환경의 보전, 해양환경의 보전, 대기환경기준 부합성, 토양환경기준 부합성, 소음·진동환경기준 부합성, 자원·에너지 순환의 효율성, 위생 및 공중보건, 환경친화적 토지이용, 인구, 주거
현황조사 항목(2)	기상,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
제외 항목(6)	전파장해, 일조장해, 산업

가. 중점평가항목의 설정

◦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평가항목 중 타 항목에 비하여 영향이 큰 중점평가항목은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음.

< 표 2.2 - 2 > 중점 평가항목의 설정

구분	항목	선정사유	검토사항
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	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	◦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	◦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
	대안 설정·분석의 적정성	◦대안 설정·분석의 적정성 검토	◦대안 검토

구분	항목	선정사유	검토사항
자연 환경의 보전	생물다양성·서식지 보전	◦사업계획으로 인한 동·식물상 변화	◦생태자연도, 보호구역 등 현황파악을 통한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
	지형 및 생태축 보전	◦사업계획으로 인한 지형 및 생태축 변화	◦주요 능선축(백두대간, 정맥 등) 현황파악을 통한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
	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	◦사업계획으로 인한 자연경관 변화	◦사업계획으로 인한 경관(스카이 라인 등) 변화 검토
	수환경의 보전	◦사업계획으로 인한 수환경 변화	◦상수원보호구역, 수변구역 등 현황파악을 통한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
	해양환경의 보전	◦사업계획으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	◦해양환경 현황파악을 통한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
생활 환경의 안정성	대기환경기준 부합성	◦공사시 건설장비 투입에 따른 연료사용 및 토공사로 인한 오염물질 발생	◦사업시행으로 인한 대기환경기준 부합성 검토
	토양환경기준 부합성	◦토양 현황을 제시하고 환경기준의 유지여부를 검토	◦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양환경기준 부합성 검토
	소음·진동환경기준 부합성	◦공사시 및 운영시 소음·진동 발생	◦사업시행으로 인한 소음·진동환경기준 부합성 검토
	자원·에너지 순환의 효율성	◦공사시 및 운영시 각종 폐기물 발생	◦사업시행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 및 처리의 적정성 검토
	위생 및 공중보건	◦사업계획으로 인한 위생 및 공중보건 변화	◦사업계획으로 인한 위생 및 공중보건 변화 검토
사회·경제 환경의 조화성	환경친화적 토지이용	◦사업계획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	◦진도 군관리계획 재정비 계획 검토
	인구 및 주거	◦사업계획으로 인한 인구 및 주거 변화	◦사업계획으로 인한 인구 및 주거 변화 검토

나. 기타항목 및 제외항목 설정

◦ 평가항목 중 중점평가항목으로 설정되지 아니한 평가항목을 기타항목과 제외항목으로 구분하였음.

< 표 2.2 - 3 > 기타항목 및 제외항목 설정

항목		사유	평가방법
현황 조사	기상	◦타항목 검토시 기초자료로 활용	◦문헌자료 분석·정리
	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	◦타항목 검토시 기초자료로 활용	◦문헌자료 분석·정리
제외 항목	전파장해	◦영향 미미	◦저감방안 불필요
	일조장해	◦영향 미미	◦저감방안 불필요
	산업	◦영향 미미	◦저감방안 불필요

2.2.2 항목별 평가 범위

◦ 주요 평가항목의 평가범위 및 선정사유는 다음과 같음.

< 표 2.2 - 4 > 항목별 평가범위 및 선정사유

구분	항목	평가범위	선정사유	비고
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	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	◦계획지구 및 진도군	◦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	
	대안 설정·분석의 적정성	◦계획지구 및 진도군	◦대안 설정·분석의 적정성	
자연환경의 보전	생물다양성·서식지 보전	◦계획지구 및 진도군	◦계획지구 및 진도군 생태자연도, 보호구역 등 현황파악을 통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	
	지형 및 생태축 보전	◦계획지구 및 진도군	◦계획지구 및 진도군 주요 능선축(백두대간, 정맥 등) 현황파악을 통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	
	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	◦계획지구 및 진도군	◦경관관련 보호지역 및 현황파악을 통한 사업계획으로 인한 경관 변화 및 적정성 검토	
	수환경의 보전	◦계획지구 및 하류수계	◦상수원보호구역, 수변구역 등 현황파악을 통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	
	해양환경의 보전	◦계획지구 및 인근해양	◦해양환경 현황파악을 통한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	
생활환경의 안정성	대기환경기준 부합성	◦계획지구 경계로부터 약 0.5㎞ 이내 - 인접 주거지역 등	◦사업시행으로 인한 대기환경기준 부합성 검토	
	토양환경기준 부합성	◦계획지구 및 진도군	◦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양환경기준 부합성 검토	
	소음·진동환경기준 부합성	◦계획지구 경계로부터 약 0.5㎞ 이내 - 인접 정온시설	◦사업시행으로 인한 소음·진동환경기준 부합성 검토	
	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	◦계획지구 및 진도군	◦환경기초시설 현황파악을 통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	
	자원·에너지 순환의 효율성	◦계획지구 및 진도군	◦사업시행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 및 처리의 적정성 검토	
	위생 및 공중보건	◦계획지구 및 진도군	◦위생 및 공중보건 현황파악을 통한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	
사회·경제 환경의 조화성	환경친화적 토지이용	◦계획지구 및 진도군	◦진도 군관리계획 재정비 계획 검토	
	인구 및 주거	◦계획지구 및 진도군	◦인구 및 주거 현황파악을 통한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	

2.2.3 항목별 평가 방법

◦ 본 사업시행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·분석하기 위한 항목별 평가방법(예측·분석기법) 및 관련자료는 아래와 같음.

< 표 2.2 - 5 > 항목별 평가방법(예측·분석기법) 및 관련자료

구분	항목	평가방법(예측 및 분석기법)	관련자료
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	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	◦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	◦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
	대안 설정·분석의 적정성	◦대안 설정·분석의 적정성	◦사업관련 도서
자연환경의 보전	생물다양성·서식지 보전	◦조사 자료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, 필요시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사업계획 시행으로 인한 동·식물상 및 서식지 등에 대한 검토	◦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 보고서 ◦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(문화재청) 등 ◦생태자연도, 국토환경성평가지도
	지형 및 생태축 보전	◦지형 및 지질현황, 주요 능선, 특이한 지형 등 현황을 파악하여 사업계획 시행으로 인한 영향검토	◦지형도 ◦남한산경도 ◦한국지질도, 한국지질자원연구원
	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	◦경관현황 및 주변 경관보전지역 등 현황을 파악하여 사업계획 시행으로 인한 영향검토	◦관련 문헌자료 등
	수환경의 보전	◦수질 및 수질관련 보호지역 등 현황을 파악하여 사업계획 시행으로 인한 영향검토	◦문헌자료(수질측정망 등) ◦상수원보호구역 ◦통계자료
	해양환경의 보전	◦어업권,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해양환경 현황을 파악하여 사업계획 시행으로 인한 영향검토	◦수산자원보호구역 ◦관련 문헌자료 등
생활환경의 안정성	대기환경기준 부합성	◦대기질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계획 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변화검토	◦기상연보 ◦관련 문헌자료 등
	토양환경기준 부합성	◦토양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계획 시행으로 인한 토양 변화검토	◦관련 문헌자료 등
	소음·진동 환경기준 부합성	◦소음·진동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계획 시행으로 인한 소음·진동 변화검토	◦관련 문헌자료 등 ◦건설기계류 소음진동 특성
	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	◦환경기초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계획 시행으로 인한 영향검토	◦통계연보 ◦하수도통계자료
	자원·에너지순환의 효율성	◦폐기물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계획 시행으로 인한 폐기물 영향검토	◦통계연보 ◦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
	위생 및 공중보건	◦위생 및 공중보건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계획 시행으로 인한 영향검토	◦통계연보
사회·경제 환경의 조화성	환경친화적 토지이용	◦사업계획을 검토하여 토지이용 변화검토	◦사업관련 도서 ◦통계연보
	인구 및 주거	◦인구 및 주거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계획 시행으로 인한 영향검토	◦통계연보

주) 최근 5년이내 최신자료 활용, 최신자료가 없을 경우 그 기간을 확대

2.3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

2.3.1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

◦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,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해서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임.

- 대상계획 승인기관 또는 관할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고,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그 내용을 반영할 계획임.

2.3.2 주민 등의 의견수렴 계획

◦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.

◦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에 의한 주민의견수렴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포함하여 공람·공고(공람기간 20일 이상)를 진행할 계획임.

- 진도군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(2개이상)을 통해 1회 이상 공고
- 공람장소 : 진도군 주무부서, 진도읍사무소 등(진도군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결정)
- 공람기간 : 20일 이상
- 의견제출기한 : 공람기간 내

2.3.3 관계기관 의견수렴 계획

◦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관계기관(영산강유역환경청, 전라남도, 진도군)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.

제 3 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결과

3.1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

○ 본 평가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・5조 규정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・운영

○ 계획시행자 : 진도군청

○ 심의방법 : 서면심의

○ 심의위원 : 위원장 포함 총 9인

< 표 3.1 - 1 >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위원

구분	소속	직책	성명	의견제출 여부	비고
1	진도군	지역개발과장	김00	×	위원장
2	영산강유역환경청	주무관	김00	○	협의기관
3	한국환경정책・평가연구원	선임연구위원	이00	○	민간전문가 (협의기관 추천위원)
4	진도군	공무원	곽00	○	계획수립기관
5	진도군	공무원	한00	○	계획수립기관
6	진도군	공무원	한00	○	계획수립기관
7	㈜우리종합00	상무이사	박00	○	민간전문가
8	㈜명신00	상무이사	양00	○	민간전문가
9	진도군	군민	이00	○	주민대표

3.2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결과

구분	심의의견	반영여부
김00 위원	□ 총괄의견	
	○본 사업은 전남 진도군 전역(440㎢)의 군관리계획(용도지역, 용도지구, 군계획시설)을 재정비하는 개발기본계획임	-
	□ 심의의견	
	1.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	
	○사업계획 수립 시 향후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	○사업계획 수립 시 향후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하겠음
	- 군 경계에 위치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범위가 다른 시·군까지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른 시·군지역내 영향범위도 대상지역에 포함하여야 함	- 군 경계에 위치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범위가 다른 시·군까지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른 시·군지역내 영향범위도 대상지역에 포함하겠음
	2. 대안 및 토지이용구상안	
	○계획의 목표와 방향, 추진 전략과 방법, 수요와 공급, 입지, 토지이용 등에 대하여 검토 가능한 다양한 대안을 3개 이상(Action/No Action 포함) 설정하고, 환경적 측면에서의 장·단점을 중점 분석·제시하여야 함	○계획의 목표와 방향, 추진 전략과 방법, 수요와 공급, 입지, 토지이용 등에 대하여 검토 가능한 다양한 대안을 3개 이상(Action/No Action 포함) 설정하고, 환경적 측면에서의 장·단점을 중점 분석·제시하겠음
	- 행정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행정수단을 검토하고 환경적 측면에서 가장 적절한 수단을 제시	- 행정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행정수단을 검토하고 환경적 측면에서 가장 적절한 수단을 제시하겠음
	- 각 계획구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용도지역을 계획	- 각 계획구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용도지역을 계획하겠음
	- 현 용도지역 보다 개발지향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에는 계획구역 및 주변의 토지이용현황 및 자연환경현황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	- 현 용도지역 보다 개발지향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에는 계획구역 및 주변의 토지이용현황 및 자연환경현황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음
	- 유입인구, 관광수요 등을 사유로 용도지역을 변경(주거지역, 계획관리지역 등)*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요분석을 통해 용도지역 변경의 필요성 및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	- 유입인구, 관광수요 등을 사유로 용도지역을 변경(주거지역, 계획관리지역 등)*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요분석을 통해 용도지역 변경의 필요성 및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겠음
	- 일정규모 이상(연접지역 고려) 용도지역을 변경(주거지역, 계획관리지역 등)하고자 하는 경우 친환경적 계획 수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행정수단 대안 검토	- 일정규모 이상(연접지역 고려) 용도지역을 변경(주거지역, 계획관리지역 등)하고자 하는 경우 친환경적 계획 수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행정수단 대안을 검토하겠음

구분	심의의견	반영여부
김00 위원	- 용도지구(취락지구) 확장·신설의 경우 토지이용 현황 및 자연환경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구계획 설정	- 용도지구(취락지구) 확장·신설의 경우 토지이용 현황 및 자연환경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구계획을 설정하겠음
	- 농업진흥구역, 보전산지 해제지역에 대해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으로 유지할 경우(No Action)와 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할 경우(Action)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설정하고 환경적 측면 등을 검토·제시	- 농업진흥구역, 보전산지 해제지역에 대해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으로 유지할 경우(No Action)와 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할 경우(Action)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설정하고 환경적 측면 등을 검토·제시하겠음
	○ 계획구역별 계획내용(변경사유, 구역계, 위치, 면적 등) 및 도시관리계획도(전·후)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, 최근의 항공(위성)사진, 유출수계, 생태·자연도, 토지적정성평가, 국토환경성평가, 지형도(표고 및 경사 분석 자료 포함)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	○ 계획구역별 계획내용(변경사유, 구역계, 위치, 면적 등) 및 도시관리계획도(전·후)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, 최근의 항공(위성)사진, 유출수계, 생태·자연도, 토지적정성평가, 국토환경성평가, 지형도(표고 및 경사 분석 자료 포함) 등을 함께 제시하겠음
	○ 개발밀도가 높아지는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(생태·자연도 1등급, 식생보전등급Ⅲ등급 이상 지역, 상수원보호구역 영향권, 생태축(녹지·하천 등), 멸종위기야생생물 등 법정보호종 서식지역, 보호가치가 필요한 지형·지질 등)을 면밀히 검토·제시하여야 함 ※ “도시관리계획(관리지역 세분화 및 GB 해제) 검토 참고사항(환경부, 2013.01.01.)” 참고	○ 개발밀도가 높아지는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(생태·자연도 1등급, 식생보전등급Ⅲ등급 이상 지역, 상수원보호구역 영향권, 생태축(녹지·하천 등), 멸종위기야생생물 등 법정보호종 서식지역, 보호가치가 필요한 지형·지질 등)을 면밀히 검토·제시하겠음
	○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함	○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지역을 검토하여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겠음
	- 국토환경성평가1·2등급 지역, 생태자연도 Ⅰ등급 지역, 생태자연도 Ⅱ등급이면서 생태·경관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, 생태보전등급 Ⅱ등급 이상 지역, 생태보전등급 Ⅲ등급이면서 경사도 20도 이상 지역 등 양호한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는 지역, 각 보호구역 인근의 완충지역	- 국토환경성평가1·2등급 지역, 생태자연도 Ⅰ등급 지역, 생태자연도 Ⅱ등급이면서 생태·경관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, 생태보전등급 Ⅱ등급 이상 지역, 생태보전등급 Ⅲ등급이면서 경사도 20도 이상 지역 등 양호한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는 지역, 각 보호구역 인근의 완충지역
	- 생태적 연결성(능선, 녹지축 등)이 단절된 우려가 있는 지역(7부 능선 이상 지역)	- 생태적 연결성(능선, 녹지축 등)이 단절된 우려가 있는 지역(7부 능선 이상 지역)
	-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역 중 현재 농지로 사용되는 지역	-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역 중 현재 농지로 사용되는 지역
	-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시 주변지역과 비교하여 이질감을 줄 수 있는 지역	-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시 주변지역과 비교하여 이질감을 줄 수 있는 지역

구분	심의의견	반영여부
김00 위원	3. 평가 항목, 범위, 방법 등	
	○ 평가항목에 ‘대안 설정·분석의 적정성’, ‘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’ 및 ‘사회·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: 환경친화적 토지이용’ 항목을 포함시키고 환경영향 예측·분석은 최근의 자료를 사용하여 가용 가능한 자료·기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실시하여야 함	○ 평가항목에 ‘대안 설정·분석의 적정성’, ‘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’ 및 ‘사회·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: 환경친화적 토지이용’ 항목을 포함시키고 환경영향 예측·분석은 최근의 자료를 사용하여 가용 가능한 자료·기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실시하겠음
	○ (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) 상위계획 검토 시에는 군기본계획을 반드시 포함시키고, 군기본계획이 미수립된 경우에는 군관리계획에 반영된 계획인구, 도시구상, 토지수요 등의 자료를 근거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·제시	○ 상위계획 검토 시에는 군기본계획을 포함시키고, 군기본계획이 미수립된 경우에는 군관리계획에 반영된 계획인구, 도시구상, 토지수요 등의 자료를 근거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·제시하겠음
	- 연안육역에 해당하는 계획구역의 경우에는 연안관리지역계획과의 부합성 및 상관성을 분석·제시	- 연안육역에 해당하는 계획구역의 경우에는 연안관리지역계획과의 부합성 및 상관성을 분석·제시하겠음
	○ (생물다양성·서식지 보전) 동·식물상 문헌조사 시에는 전국자연환경조사보고서 뿐만 아니라 인용가능한 문헌자료(공공기관에서 작성한 보고서 우선 조사,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후환경영향조사서 등)을 포함	○ 동·식물상 문헌조사 시에는 전국자연환경조사보고서 뿐만 아니라 인용가능한 문헌자료(공공기관에서 작성한 보고서 우선 조사,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후환경영향조사서 등)을 포함하겠음
	- 문헌조사 결과 및 계획구역 및 주변지역의 보전가치 등을 토대로 필요 시 현황조사 실시	- 문헌조사 결과 및 계획구역 및 주변지역의 보전가치 등을 토대로 필요 시 현황조사를 실시하겠음
	○ (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) 계획구역 및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거시적 미시적 관점에서 경관영향 변화를 제시하고 저감방안을 제시	○ 계획구역 및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거시적 미시적 관점에서 경관영향 변화를 제시하고 저감방안을 제시하겠음
	- 계획구역이 「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」에 따라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에 포함될 경우에는 심의자료 작성·제시	- 계획구역이 「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」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·제시하겠음
	○ (수환경의 보전) 각종 수환경 관련 보호구역에 대한 영향 검토·제시	○ 각종 수환경 관련 보호구역에 대한 영향을 검토·제시하겠음
	○ (환경기준 부합성) 계획구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한 대기질 및 소음·진동, 토양 등 현황을 제시하고 환경기준의 유지여부를 검토	○ 계획구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한 대기질 및 소음·진동, 토양 등 현황을 제시하고 환경기준의 유지여부를 검토하겠음
	○ (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) 개발밀도를 높이는 계획의 경우 추가 용수필요량, 오폐수 발생량, 폐기물 발생량 등을 개략적으로 예측하고, 개발계획 시행 시 환경기초시설 수용가능여부을 검토	○ 개발밀도를 높이는 계획의 경우 추가 용수필요량, 오폐수 발생량, 폐기물 발생량 등을 개략적으로 예측하고, 개발계획 시행 시 환경기초시설 수용가능여부을 검토하겠음
	4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	
	○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시에는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	○ 공고·공람을 실시하고, 읍·면사무소 등을 통하여 많은 주민이 의견수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음

구분	심의의견	반영여부
이00 위원	□ 총괄의견	
	○ 금회 재정비 계획은 다수의 농림지역이나 생산-보전관리지역을 “개발수요 대응” 등 구체적이지 않은 사유로 과도하게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적절한 군관리계획 재정비로 보기 어려움. 따라서 계획대상지 및 주변 지역 환경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도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지양하여야 함	○ 계획대상지 및 주변 지역 환경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계획하겠음
	□ 심의의견	
	1.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	
	○ 의견 없음	-
	2. 대안 검토	
	○ 환경적으로 민감하거나 보전이 필요한 해안 사구·사빈지역 및 산림지역, 그리고 하천변 농경지 등을 과도하게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보다는 기존 용도지역으로 유지하거나 생산-보전관리지역으로 계획하는 대안 선정·비교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	○ 환경적으로 민감하거나 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 환경 형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계획을 수립하겠음
	3. 환경영향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	
	○ 각 계획부지별로 구체적인 결정·변경 사유 및 현황 자료(도면) 제시	○ 각 계획부지별로 구체적인 결정·변경 사유 및 현황 자료(도면)를 제시하겠음
	- 특히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개발밀도가 상향되는 지역(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, 비도시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) 중 면적이 1,000㎡ 이상인 지역, 자연취락지구 확장 구역, 도로의 신설·확장 또는 연장 구역, 그리고 도로 외 모든 도시계획시설 변경계획 구역 등에 대하여 블록별 자료 작성	-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개발밀도가 상향되는 지역(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, 비도시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) 중 면적이 1,000㎡ 이상인 지역, 자연취락지구 확장 구역, 도로의 신설·확장 또는 연장구역, 그리고 도로 외 모든 도시계획시설 변경계획 구역 등에 대하여 블록별 자료를 작성하겠음
	- 현황 자료(도면) : 계획부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의 (1) 기정 및 변경용도가 표시된 도면 (2) 해상도 높은 항공사진 또는 위성사진 (3) 생태·자연도 (4) 녹지자연도(6등급, 7등급 및 8등급 이상 지역만 표시) (5) 경사도면(경사도 20° 이상 지역만 표시) (6) 표고도 (7) 국토환경성평가도 (8) 토지적성평가도	- 계획부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의 현황 자료(도면)를 제시하겠음 (1) 기정 및 변경용도가 표시된 도면 (2) 해상도 높은 항공사진 또는 위성사진 (3) 생태·자연도 (4) 녹지자연도(6등급, 7등급 및 8등급 이상 지역만 표시) (5) 경사도면(경사도 20° 이상 지역만 표시) (6) 표고도 (7) 국토환경성평가도 (8) 토지적성평가도

구분	심의의견	반영여부
이00 위원	- 도면(한글, pdf 또는 ppt 파일형식)은 PC모니터에서 화면을 300% 이상 확대하였을 때, 도면의 Contents[명칭, 부지경계선, 해당 용도, 해당 등급, 수계(하천, 농수로, 산간계류 등) 등]를 명확히 인지·구분·확인할 수 있는 해상도로 작성	- 도면(한글, pdf 또는 ppt 파일형식)은 PC모니터에서 화면을 300% 이상 확대하였을 때, 도면의 Contents[명칭, 부지경계선, 해당 용도, 해당 등급, 수계(하천, 농수로, 산간계류 등) 등]를 명확히 인지·구분·확인할 수 있는 해상도로 작성하겠음
	○ 하천과 인접한 지역은 수계 현황도를 추가로 작성	○ 하천과 인접한 지역은 수계 현황도를 추가로 작성하겠음
	- 수계 현황도에는 하천개황도(등고선 제외), 상수원보호구역과 취수장, 하천의 구분(소하천, 지방하천, 국가하천), 하천/호소 수질등급, 계획홍수위선, 물 흐름 방향, 소 유역 내 유선, 저수지(이용현황 및 규모 등) 등을 개략적인 이격거리와 함께 표시	- 수계 현황도에는 하천개황도(등고선 제외), 상수원보호구역과 취수장, 하천의 구분(소하천, 지방하천, 국가하천), 하천/호소 수질등급, 계획홍수위선, 물 흐름 방향, 소 유역 내 유선, 저수지(이용현황 및 규모 등) 등을 개략적인 이격거리와 함께 표시하겠음
	- 계획지구와 하천/호소와의 거리는 명확히 표시	- 계획지구와 하천/호소와의 거리는 명확히 표시하겠음
	- 계획지구 하류의 침수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계획지구의 오수처리 및 용수공급 현황을 파악	- 계획지구 하류의 침수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계획지구의 오수처리 및 용수공급 현황을 파악하겠음
	○ 계획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전체 자연환경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 제시	○ 계획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전체 자연환경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제시하겠음
	- 주능선(생태)축 및 소능선(생태)축이 표시된 도시 개황도면(각 계획부지 경계 및 번호 표시) 도면	- 주능선(생태)축 및 소능선(생태)축이 표시된 도시 개황도면(각 계획부지 경계 및 번호 표시)을 제시하겠음
	- 법정보호종 서식·확인 지점(points)과 그 종명이 표기된 도시 개황도면	- 법정보호종 서식·확인 지점(points)과 그 종명이 표기된 도시 개황도면을 제시하겠음
	4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	
	○ 군관리계획에 대하여 현수막 및 다수의 설명회와 공청회 개최 등 보다 적극적인 주민 공지 및 의견수렴을 계획할 필요가 있으며,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2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함	○ 주민의견수렴은 공고·공람을 실시하고 읍·면사무소를 통하여 적극적인 주민의견수렴을 실시토록 하며, 공고·공람(주민의견수렴) 기간은 20일 이상 실시하겠음

구분	심의의견	반영여부
곽00 위원	□ 총괄의견	
	○ 평가항목·범위 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 항목별 검토의견 및 문제점을 토대로 작성	○ 평가항목·범위 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 항목별 검토의견 및 문제점을 토대로 작성하겠음
	- 진도 군관리계획(재정비)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평가준비서를 검토한 결과 평가항목 및 범위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선정된 것으로 판단됨	- 평가준비서에 제시된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을 반영하겠음
	□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	
	1.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	
	○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- 진도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계획에 걸맞게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 설정된 것으로 판단됨	- 평가준비서에 제시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반영하겠음
	2. 토지이용 구상안	
	○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용도지역, 용도지구 및 시설에 대해 주민과의 의견소통에 적절한 계획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	○ 공고·공람을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제시된 주민의견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음
	3. 대안	
	○ 별도 의견 없음	-
	4.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	
	○ 적절하게 선정된 것으로 판단됨	○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을 선정하겠음
	5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	
	○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 -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계획수립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	○ 공고·공람을 실시하고 읍·면사무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음
	6. 기타	
	○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이나 입지 적절성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대안 기술	○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, 입지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하겠음

구분	심의의견	반영여부
한00 위원	□ 총괄의견	
	○ 환경영향평가법에 규정된 자연환경, 생활환경, 사회 및 경제환경 등의 분야를 모두 검토해야 함	○ 자연환경의 보전, 생활환경의 안전성, 사회·경제환경과의 조화성 등을 검토항목으로 선정하였음
	○ 특히, 사업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, 주민 의견수렴을 실시하는 등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	○ 사업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, 주민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음
	□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	
	1.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	
	○ 영향평가 구역의 설정은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해야 할 것이므로 사업대상지역 및 진도군 전체를 대상지역으로 설정함이 타당함	○ 사업대상지역 및 진도군 전체를 대상지역으로 설정하겠음
	2. 토지이용 구상안	
	○ 진도군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기 바람	○ 진도군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겠음
	3. 대안	
	○ 대안선정은 타당함	○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대안을 선정하겠음
	4.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	
	○ 평가항목, 범위, 방법 등의 선정은 타당함	○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항목, 범위, 방법 등을 선정하겠음
	5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	
	○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	○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음
	6. 기타	
	○ 사업대상지역 및 주변지역 토지이용현황, 토지적성평가 결과, 주변 용도지역,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의 계획이 적정하도록 계획을 수립	○ 사업대상지역 및 주변지역 토지이용현황, 토지적성평가 결과, 주변 용도지역,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의 계획이 적정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음

구분	심의의견	반영여부
한00 위원	□ 총괄의견	
	○ 진도 군관리계획 재정비 전략영향평가 평가준비서를 검토한 결과 평가항목 및 범위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선정되었다고 사료됨	○ 진도 군관리계획 재정비 전략영향평가 평가준비서를 검토한 결과 평가항목 및 범위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선정되었다고 사료됨
	□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	
	1.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	
	○ 진도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대상지역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선정됨	- 평가준비서에 제시된 평가 항목별 대상지역을 반영하겠음
	2. 토지이용 구상안	
	○ 도시지역은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개발현황을 감안하여 적정하며, 비도시지역은 용도지역 현실화 및 개발계획에 따라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나, 임야(산) 등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면밀하게 검토 필요	○ 임야(산) 등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겠음
	3. 대안	
	○ 농림지역 중 보전가지가 높은 지역(임야 등)은 산림청 등과 사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임	○ 농림지역 중 보전가지가 높은 임야는 산림청 별도 협의를 진행하겠음
	4.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	
	○ 군관리계획 재정비로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 증·감에 따른 항목검토 및 도시지역의 용도변경과 의신면 초사리(대명리조트 개발) 일원등 비도시지역 용도변경으로 위생·공중보건, 인구·주거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검토	○ 위생·공중보건, 인구·주거를 평가항목으로 선정하겠음
	5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	
	○ 신문 및 공고,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함	○ 공고·공람 및 정보지원시스템 등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음
	6. 기타	
	○ 평가준비서 4.3.4 자연·도시공원 지정현황 (p-54) <표 4.3 - 4> 진도군 자연공원 지정현황중 공원구역 면적정정 요망(2,266.22㎢ → 604.032㎢)	○ 심의의견을 반영하겠음
	○ 평가준비서 p-54 <그림 4.8 - 5> 지역개황도 내 취수장, 하수처리시설 등의 위치표시 정정 요망	○ 심의의견을 반영하겠음

구분	심의의견	반영여부
박00 위원	□ 총괄의견	
	○ 본 계획은 진도 군관리계획(재정비)을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친환경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	○ 친환경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음
	□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	
	1.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	
	○ 대상지역 설정은 타당함	○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대상지역을 설정하겠음
	2. 토지이용 구상안	
	○ 진도군 도시공간구조 및 생활권 구상에 부합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	○ 진도군 도시공간구조 및 생활권 구상에 부합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겠음
	3. 대안	
	○ 대안1(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)이 타당함	○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대안을 선정하겠음
	4.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	
	○ 평가항목, 범위, 방법 등이 타당함	○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항목, 범위, 방법 등을 설정하겠음
	5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	
	○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진도군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하여야 함	○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진도군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하겠음
	6. 기타	
	○ 진도 군관리계획(재정비) 수립은 난개발을 방지하고, 친환경친화적 토지이용을 수립하여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	○ 진도 군관리계획(재정비) 수립은 난개발을 방지하고, 친환경친화적 토지이용을 수립하여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음

구분	심의의견	반영여부
양00 위원	□ 총괄의견	
	○ 진도 군관리계획 재정비는 진도군 7개 읍·면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토지이용현황, 개발계획, 환경적 영향,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을 (변경) 결정하여야 함	○ 토지이용현황, 개발계획, 환경적 영향,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을 (변경) 결정하겠음
	□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	
	1.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	
	○ 광역평가대상지역은 진도군, 중점평가대상지역은 계획지구로 설정하되 해안축, 능선축과 연계되는 주요 생태축을 고려하여 대상지역 설정하시기 바람	○ 광역평가대상지역은 진도군, 중점평가대상지역은 계획지구로 설정하고, 해안축, 능선축과 연계되는 주요 생태축을 고려하여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음
	2. 토지이용 구상안	
	○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관성 고려한 토지이용 구상안 수립 반영하시기 바람	○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음
	3. 대안	
	○ 계획비교 대안 외 추가 대안을 설정하여 최소 2개 대안은 검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	○ 계획비교 대안 외 추가 대안을 설정하겠음
	4.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	
	○ 평가준비서에 제시된 평가항목, 범위, 방법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, 평가 항목으로 계획의 적정성을 추가하여 검토	○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항목으로 추가하였음
	5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	
	○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법을 준수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제시된 주민의견은 최대한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	○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법을 준수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제시된 주민의견은 최대한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음
	6. 기타	
	○ 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고, 토지이용현황, 개발계획, 각종 보호지역 등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	○ 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고, 토지이용현황, 개발계획, 각종 보호지역 등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음

구분	심의의견	반영여부
이OO 위원	□ 총괄의견	
	○ 용도지역, 도시계획시설 등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계획과의 연계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, 일단의 토지도 세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겠음	○ 상위계획과의 연계여부를 검토하고, 계획지구별 검토를 실시하겠음
	□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	
	1.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	
	○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포함한 항목별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설정 바람	○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포함한 항목을 선정하고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대상지역으로 설정하겠음
	2. 토지이용 구상안	
	○ 환경친화적이며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검토 계획수립하여야 함	○ 환경친화적이며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검토 계획수립하여야 함
	4.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	
	○ 세부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평가범위 및 중점검토지역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가 실시되어야 함	○ 평가범위 및 중점검토지역을 설정하고 계획지구별 구체적인 검토를 실시하겠음
	5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	
	○ 주민의견 수렴이 타당	○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하겠음